

#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인사0110-1129 (전화번호 731-6222)	전결규정 4 조 9항 전결사항 부시장 시장 <i>1985. 7. 11. 19</i> <i>1985. 7. 11.</i>
처리기간		
시행일자	85.7	
보존연한		
보 조 기 관	부시장 내무국장 인사과장 <b>전결</b> <b>등기</b> <i>103</i>	법무감찰실 사관
기안책임자	박승룡 85.7	권오직 조
경 유 수 신 참 조	각안참조 <i>공고제 392호</i>	발 통 1985. 7. 11 1985. 7. 11
제 목	토목9급 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연장 등록	
(제 1안)		
수신 내부 결재		
제목 갈음		
1. '83년도 9급 토목직 신규채용시험에 합격되어 임용후보자로 등록된 자로 명부 유효기간 (2년) 내에 미임용된 자중 군입대자를 제외한 임용후보자를 지방공무원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6.7.14. 까지 유효기간을 1년 연장 조치코자 합니다.		
가. 유효기간 : 1985. 7. 14.		
나. 연장인원 : 11 명 (명단 별첨)		
다. 연장기간 : 85.7.15 - 86.7.14 (1년간)		
라. 미 임용 사유		
지하철운영사업소, 지하철건설본부의 기구축소로 인한 정원 감축 으로 임용 지연		
첨부		

1205-25(2-1)A(갑)  
1981. 12. 18승인

정직 질서 창조

b-1

190mm×268mm (인쇄용지 2급 80g/m<sup>2</sup>)  
가 33 - 41 1984. 10. 20.

첨부 1. 임용명부 유효기간 연장 대상자 명단 1부

2. 공고 (안) 1부. 끝.

(제 2안)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갈 음

지방공무원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괴하가 등록한 토목직9급  
신규임용후보자 명부기간이 1986.7.14. 까지 연장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끝.

수신처 김성술 외 10명

(제3안) - 114

수신 공보관

발신

제목 임용후보 유효기간 연장 공고문 시보 게재 의뢰

지방공무원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별첨 토목9급 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연장 공고문을 송부하오니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공고문 1부. 끝.

게재  
금지

명부 유효기간 연장 대상자

등록번호	성명	성별	생년월일	직렬	직급	유효기간	연장기간
109	김성술	남	57.11.3	토목	9급	85.7.14	86.7.13
110	정락훈	"	58.1.4	"	"	"	"
111	허영업	"	59.2.13	"	"	"	"
112	이재호	"	59.3.29	"	"	"	"
113	김용희	"	57.9.6	"	"	"	"
114	노창근	"	58.12.27	"	"	"	"
115	이윤건	"	57.11.24	"	"	"	"
116	조용환	"	58.12.16	"	"	"	"
119	최희권	"	57.5.7	"	"	"	"
120	이한수	"	59.7.1	"	"	"	"
121	김태현	"	59.5.24	"	"	"	"
계	11 명						

6-3

## 공 고 (안)

공고 제



날짜	1985. 7. 17	제 197호
상장자	법무국장	임구현

지방공무원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기술직  
신규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을 연장 공고함.

## 다 음

등록번호	성명	성별	년령	직렬	직급	명부유효연장기간	비고
109	김성술	남	28	토목	9급	86.7.13	
110	정락훈	"	27	"	"	"	
111	허영엽	"	26	"	"	"	
112	이재호	"	26	"	"	"	
113	김용희	"	28	"	"	"	
114	노창근	"	27	"	"	"	
115	이윤관	"	28	"	"	"	
116	조용환	"	27	"	"	"	
119	최희관	"	29	"	"	"	
120	이한수	"	26	"	"	"	
121	김태현	"	26	"	"	"	

1985. 7.

서 울 특 별 시 장

6-4

176

는 구하고 서울特別市·直轄市 및 道人  
事委員會에서 이를 實施한다.

(개정 78.12.6 법률 3152)

⑤ 任用繼者는 第36條 및 第39條의 規定에 의한 新規任用후보자 또는 候補者가 없거나 人事行政運營上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職의 新規任用 또는 外進試驗에 상당한 國家 또는 다른 地方自治團體의 試驗에 合格한 者를 그 職의 新規任用 및 外進試驗에 合格한 者로 보아 任用할 수 있다.

**第33條 (平等의 原則) 公開競爭이 의한 任用試驗은 同 한 資格을 가진 全國民에게 平等하게公開해야 한다. 試驗의 時期 및 場所는 應試者的 편의를 考慮하여 決定해야 한다.**

**第34條 (受驗資格) 各種試驗의 受驗資格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5條 (新規任用試驗의 公告) ① 公開競爭新規任用試驗을 實施할 때에는 任用 認定職級· 응시資格· 선발예정인원· 試驗의 方法· 시기 및 場所 기타 必要한 事項을 상당한期間公告하여야 한다.**

② 缺員補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必要한 경우에는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 예정기과를 미리 정하여 公開競爭新規任用試驗을 實施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試驗에 依하여 任用된 公務員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期間 當該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과에 雜處하여야 한다.

**第36條 (新規任用候補者名簿) ①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才能 地方自治團體의 人事委員會에서 實施한 新規任用試驗에 合格한 者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新規任用候補者名簿에 登載하여야 한다.**

② 第32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이 5級公務員의 新規任用試驗을 實施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特別市長· 直轄市長· 道知事 및 教育監은 그 合格者를 新規任用候補者名簿에 登載하여야 한다. (개정 78.12.6 법률 3152)

③ 新規任用候補者名簿는 누구든지 이를 閱覽할 수 있다.

④ 5級公務員公開競爭任用試驗에 合格한 者의 任用候補者名簿의 有効期間은 5年으로 하고, 기타의 新規任用候補者名簿의 有効期間은 2年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다만, 試驗實施機關의 長은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안에서 그 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

(개정 78.12.6 법률 3152)

⑤ 公開競爭任用試驗合格者가 任用候補者登錄을 填한 후 그 名簿의 有効期間內에 兵役法에 의한 兵役服務를 위하여 軍에 入服한 경우(大學生 軍事訓練過程履修者를 포함한다)의 義務服務期間과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事由로 任用되지 못한 期間은 第4項의 期間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78.12.6 법률 3152, 81. 4.20 법률 3448)

⑥ 第4項의 規定에 의해 新規任用候補者名簿의 有効期間을 延長하는 경우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지체없이 이를 公告해야 한다.

〈改正 66. 4. 30 法 1794〉

**第37條 (新規任用方法) ① 第36條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新規任用候補者名簿를 作成한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그 名簿에 登載된 者중에서 公務員**

## 기술직신규임용후보자명부유효기간연장

1. 대상직급 : 토목직 9급
2. 등록일자 : 1983.7.15
3. 유효기간 : 1985.7.14 (등록일로부터 2년)
4. 연장사유
  - 지하철운영사업소 및 지하철건설본부 기구폐지로 토목직 정원 감축으로 명부 유효기간내 일부 임용불가
5. 임용현황 - '85.7.10 현재

83공체인원	임용인원	미    임    용			비    고
		계	군입대자	결원대기자	
121	107	14	3	11	

6. 유효기간 연장인원 - 11명

### 7. 관계규정

- 지방공무원법 제36조 - 신규임용후보자 명부

#### < 제 4 항 >

- 6급이하 신규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 등록일로부터 2년
- 필요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 - 1년이내

#### < 제 5 항 >

- 군입대자 의무복무기간은 유효기간에 미산입

#### < 제 6 항 >

- 신규임용후보자 유효기간 연장시 즉시공고